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4의2] <개정 2023. 5. 25.>

안전검사시설기준(제38조관련)

시설품명	세부기준
1. 중량계	○측정범위 : 0~5톤 이상, 최소지시값 : 1kg/ton 이하
2.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	○측정각도 : 35° 이상 ○측정하중 : 40톤 이상
3. 사이드슬립 측정기	○미끄럼양의 지시 및 판정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 ·0점 지시 : ±0.2㎜/m(m/㎞) 이내 ·5㎜ 지시 : ±0.2㎜/m(m/㎞) 이내 ·판정정밀도 : ±0.2㎜/m(m/㎞) 이내
4. 제동시험기	○설정하중에 대한 제동력지시 및 중량설정지시의 허용오차 범위 ·좌우제동력지시 : ±5% 이내(차륜구동력은 ±2% 이내) ·좌우합계제동력지시 : ±5% 이내 ·좌우차이제동력판정 : ±25% 이내 ·중량설정지시 : ±5% 이내 ○축하중에 대한 판정정밀도의 허용오차 범위 ·좌우제동력합계 판정 : ±5% 이내 ·좌우제동력차이지시 : ±2% 이내
5. 전조등시험기	○설정값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 ·광도지시 : ±15% 이내 ·광도편차 : ±1/6도 이내 ·광도 : ±1000칸델라 이내 ·광축 : ±1/6도 이내
6. 소음 및 매연 측정기	○소음계 ·측정범위 : 24 ~ 120dB ·최소지시값 : 0.1dB 이내 ○매연측정기 ·지시계 : 0% ~ 100% 지시, 최소눈금치 1% 이하
7. 일산화탄소 측정기	○지시범위 ·CO : 지시범위는 0 ~ 5% 이상 10% 이하, 최소눈금치 0.2% 이하 ·HC : 지시범위는 0ppm ~ 1000ppm 이상 10000ppm 이하, 최소눈금치 20ppm 이하
8. 가스누출 측정기	○정밀도 : 폭발하한값(LEL) 20% 이내에서 감지
9.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	○측정범위 : 0 ~ 100 % ○정밀도 : 측정값의 ±3% 이내
10. 공기과잉율 측정기	○측정범위 : 0.5 ~ 1.6 이상, 최소눈금치 0.01 이하

주 : 1. 검사시설은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이어야 한다.
2.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구조 및 사용연료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.
예)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: 중량계,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, 제동시험기
3. 검사시설의 정밀도는 별표 12에 따른다.